

국방전략기술공학과 운영 내규

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학칙에 의거 국방전략기술공학과 학과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한 학생들의 학업의욕 고취하고 학과운영의 내적 충실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제적)

- ① 학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.
 1. 매 학기말 평균평점이 2.0 미만인 자
 2. ‘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’ 제13조의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
 3. 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해군 장교 임관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, 자발적으로 임관을 포기한 자 (일부 개정 2025. 6. 11)
- ② 학칙에 의거 제적된 자는 해군 군장학생 관리규정에 따라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.

제3조(수업연한)

- ① 수업연한은 8학기를 원칙으로 하되, ‘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’ 제11조가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수업을 연장할 수 있다.
 1. 군 병원에서 심체검사에 따라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
 2.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본인의 경제활동 외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3. 국외유학, 국외연수 또는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학기연장을 할 수 있는 학생은 ‘병역법 시행령’ 제124조제1항에 따른 제한연령 내에 졸업하거나 수료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.

(전문 개정 2018. 1. 12) (일부 개정 2022. 11. 7)

제4조(졸업)

- ① 국방전략기술공학과 학위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 1. 학칙 제47조(학위수여)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2. 해군 주관 군사실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 세부사항은 제5조(해군 주관 군사실습)에 따른다.
 3. 4년 간 군사학 6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.
필수 군사학과목(해전사, 항해학개론, 군대윤리, 리더십) 4과목과
선택 군사학과목(해군무기체계공학, 해양전략과 국가발전, 대잠전체계해양

환경공학, 대잠전체계음향탐지공학) 4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총 6과목의 군사학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향후 군사학과목 증감에 따라 필수이수 과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본 내규는 현 재학생부터 소급 적용된다. (일부 개정 2025. 1. 6)

- 4. ~~졸업논문을 통과하여야 한다. 국방전략기술공학과 졸업논문의 세부사항은 ‘국방전략기술공학과 졸업논문 내규’에 따른다. (일부 개정 2022. 11. 7)~~
(전문 삭제 2025. 1. 6)

제5조(해군 주관 군사실습)

- ① 학위수여를 위하여 매 학년 여름방학 중 일정기간 동안 해군에서 제공하는 장교직무체험, 연안실습 등 군사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교수회의에서 인정한 군사실습에 준하는 학술대회, 교육프로그램 등 참가 시 군사실습 대체가 가능하다.
- ② 복수학위, 공동학위 및 교환학생의 경우 해군 주관 군사실습 참가는 학교와 해군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질병, 상해,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실습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군사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
(일부 개정 2022. 11. 7)

제6조(평가)

- ① ~~재학생들은 국방전략기술공학과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업성취도 및 미래 역량을~~
~~평가받는다.~~
- ② ~~평가는 재학생이 3학년 2학기 시작 전에 실시한다.~~
- ③ ~~하나 이상의 병과에서 해군의 병과 분류 기준과 신청 인원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,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재학생들의 병과를 분류한다.~~
- ④ ~~평가 기준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, 그 결과를 재학생들에게 공개한다.~~

(전문 개정 2018. 1. 12) (전문 삭제 2022. 11. 7)

제6조(병과분류)

- ① 재학생들은 매년 해군에서 통보하는 병과분류 허용인원 판단 결과에 따라 3학년 2학기에 예비분류, 4학년 2학기에 확정분류 한다.
- ② 병과 확정분류 시 하나 이상의 병과에서 해군 병과분류 허용인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병과를 분류한다.

구 분	학과성적	위원회 점수	계
반영비율	90%	10%	100%

- 1. 학과성적

전공과목(군사학과목을 포함한 전공기초, 전공핵심, 전공심화 과목)을 80%, 군사학과목을 20% 비율로 점수를 반영하며,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. 학과성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점수를 산출한다.

$$\text{학과성적} = \frac{(\text{전공과목 평점} \times 0.8) + (\text{군사학과목 평점} \times 0.2)}{\text{전체평점} (4.5)} \times 90 (\%)$$

2. 위원회 점수

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의 다중(부)전공 여부, 자격증 취득, 품행, 학과발전 기여도, 병과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한다.

- ③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결과는 재학생들에게 공개한다.
- ④ 병과분류 위원회 결과, 해군 병과분류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병과 발생 시 해군 주관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른다.

(전문 추가 2022. 11. 7)

제7조(위원회)

① 목적

위원회는 국방전략기술공학과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병과분류, 제적에 대한 제청 등 학과 전반적인 현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구성

- 1. 위원회는 위원장, 위원, 간사로 구성된다.
- 2. 위원장은 국방전략기술공학과 학과장이 맡으며, 위원은 국방전략기술공학과 소속 및 겸임교수(Joint Appointment)로 한다.
- 3.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며,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 간사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,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표결권이 없다.
- 4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기능

- 1. 제6조(병과분류)의 기준에 따라 4학년 재학생의 병과분류를 심의한다.
- 2. 제2조(제적)에 의거하여 재학생 제적에 대한 심의 후 이를 제청한다.
- 3. 기타 학과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.

④ 의결방법

위원회는 재적위원 중 5명 이상 출석 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1/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표결권을 행사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(전문 추가 2022. 11. 7)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칙 (2022. 11. 7. 개정)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국방전략기술공학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.

부칙 (2025. 6. 11. 개정)

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국방전략기술공학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.